

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2021. 10.

국무위원 황 희

(문화체육관광부장관)

1. 개정이유

감염병 위기경보 발령 시 호텔업 등급결정의 통지기간이 아닌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호텔업계의 혼선을 방지하고, 유예 기준일을 경보 해제일이 아닌 발령일로 하여 유예기간 기준을 명확히 하고, 유예기간을 연장하여 재난의 장기화에 대응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제2항에 따라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, 경보 발령일로부터 2년의 범위에서 등급결정 신청기간 연장(안 제25조제1항 단서 신설 및 현행 제25조제2항제1호 삭제)
- 나. 감염병 확산으로 등급결정 신청기간이 연장된 경우, 새로운 등급이 결정될 때까지 기존 등급의 유효기간 연장(안 제25조의3 제1항 개정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 없음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 예정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

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법 제19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등급결정을 연기하려는 경우, 감염병 확산으로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지역에서 등록을 한 자는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날로부터 2년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까지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25조제2항 단서 중 “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기간”을 “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등급결정 기간”으로 한다.

제2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는 삭제한다.

제25조의3제1항 단서 중 “제25조제2항 각 호”를 “제2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기경보에 대한 경과조치) 이 규칙의 시행 당시 「재난 및 안전

관리 기본법」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어
있는 경우, 시행일에 경보가 발령된 것으로 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② · ③ (생략)

----- . ----- 제25조 제1항 단서
및 제2항 단서-----

-----.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